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가 소득 안전망의 구축·강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면서 실장 밑에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3명, 7급 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농산업혁신정책실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동물 보호·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인 동물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사무를 동물복지정책국으로 이관하며,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3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

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통주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스마트농업 고도화 및 농산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선제적 쌀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며, 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농촌정책국·농업혁신정책실·방역정책국 및 식량정책실”을 “운영지원과·농촌정책국·농산업혁신정책실·동물복지정책국·식량정책실 및 방역정책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두되,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를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3명”을 “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5호의2 및 제32호의2부터 제3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32의2. 농식품산업 관련 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

32의3.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32의4.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사항

32의5.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
괄·조정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동물복지정책국) ① 동물복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2.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의사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5.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정책의 개발·시행 및 동물실험 윤리제도
의 운영
6. 동물 보호·복지 분야의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제17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
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6

호”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을 “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이 장에서 “인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3조 중 “교육원”을 각각 “인재원”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43명”을 “46명”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후단 중 “52명”을 “51명”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한시조직”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농촌정책국”을 “동물복지정책국”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한시정원) 농가 소득의 안전망 구축·강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635”를 “664”로 하고, 일반직 계 “631”을 “660”으로 하

며, 고위공무원단 “14”를 “15”로, 3급 또는 4급 이하 “611”을 “639”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674”를 각각 “2,66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629”를 “2,619”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가. 농산업혁신정책실 1개 정책관등	1명
나. 동물복지정책국	0명
다. 동물복지정책국 1개 과	2명

별표 5 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 전단·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2)다) 및 같은 표 제4호 중 “검역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5조 관련)

제45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 속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u>농식품 공무원교육원</u> 을 둔다.	제2조(소속기관) ① ----- ----- ----- ----- <u>농식품 인재개발원</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직무)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u>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하부조직) ① 농림축산식품 부에 <u>운영지원과·농촌정책국 ·농업혁신정책실·방역정책국</u> 및 <u>식량정책실</u> 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u>운영지원과·농촌정책국 ·농산업혁신정책실·동물복지 정책국·식량정책실 및 방역정 책국</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 국에 국장 1명을 <u>두되, 국장 밑 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u>	제11조(농촌정책국) ① ----- ----- <u>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u>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	<u><삭 제></u>

<u>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u>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18. (생 략) 19. <u>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농 업인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 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u> 20. · 21. (생 략) 22. <u>농식품산업 관련 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u> 23. <u>농식품 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 정</u> 24. <u>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에 관한 사항</u> 25. <u>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 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의 총괄·조정</u> 26. <u>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u> 27. <u>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28. 「수의사법」의 운영에 관 한 사항	② ----- --. 1. ~ 18. (현행과 같음) <삭 제> 19. · 20. (현행 제20호 및 제21 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

29. 의사 면허, 의사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제12조(농업혁신정책실) ① 농업
혁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
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25. (생 략)

<신 설>

26. ~ 3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제12조(농산업혁신정책실) ① 농
산업혁신정책실-----
----- 4명-----
--.

② ----- 4명-----

-----.

③ -----
--.

1. ~ 25. (현행과 같음)

25의2. 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
농업인의 지위 및 삶의 질 향
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26. ~ 32. (현행과 같음)

32의2. 농식품산업 관련 녹색성
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32의3.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협
약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조정

32의4.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사항

32의5.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33. ~ 46. (생 략)

<신 설>

제13조 (생 략)

제17조(직무)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이 장에서 “검역본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4. (생 략)

5.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사항의 총괄·조정

33. ~ 46. (현행과 같음)

제13조(동물복지정책국) ① 동물

복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2.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의사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5.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정
책의 개발·시행 및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운영

6. 동물 보호·복지 분야의 연
구·조사·교육 및 홍보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7조(직무)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u>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u> 6. · 7. (생 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 · 조사 및 연구 제20조(동물질병관리부) ① (생 략)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u>동물 보호 · 복지에 관한 정책의 개발 · 시행 및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운영</u> 12. <u>동물 보호 · 복지 분야의 연구 · 조사 · 교육 및 홍보</u> 13. · 14. (생 략) 제5장 <u>농식품공무원교육원</u> 제31조(직무) <u>농식품공무원교육원</u> (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2. (생 략)	5. · 6.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7. ----- 제6호----- ----- -- 제20조(동물질병관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1. · 12. (현행 제13호 및 제14호와 같음) 제5장 <u>농식품인재개발원</u> 제31조(직무) <u>농식품인재개발원</u> (이하 이 장에서 “인재원”이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	--

제32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
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생략)

제3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
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
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
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3
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
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제32조(원장) ① 인재원-----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하부조직) -----

-- 인재원-----

-----.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46
명-----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10장 한시조직

제42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51명

.

③ (현행과 같음)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2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을 둔다.

② ~ ⑥ (생략)

제43조(농산업수출진흥과)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산업수출진흥과를 둔다.

② ~ ⑤ (생략)

제44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둔다.

② ~ ⑥ (생략)

<신설>

① ----- 농산업혁신정책실-----

----- 2027년 12월 31
일-----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농산업수출진흥과) ① --
----- 농산업혁신정책

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①
----- 동물복지정책국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한시정원) 농가 소득의 안
전망 구축·강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
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35</u>	<u>664</u>	+29
•	•	•	
•	•	•	
일반직 계	<u>631</u>	<u>660</u>	+29
고위공무원단	<u>14</u>	<u>15</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11</u>	<u>639</u>	+28
•	•	•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74</u>	<u>2,664</u>	-10
일반직 계	<u>2,674</u>	<u>2,664</u>	-10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629</u>	<u>2,619</u>	-10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7